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7958 판결 [매매계약금 반환 청구의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795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271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변론종결 2021. 12. 1.

판결선고 2022. 1. 1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2715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¹⁾ .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 판사 오창민

1)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항소심 변론기일이 모두 통지되었음에도 원고들이 변론기일에출석하지 않은 점, 변론재개신청시까지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